

거창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○ 제출일 : 1999. 5. 29.

○ 제출자 :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1999. 6. 10

다. 의안번호 : 제 99-18 호

2.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제정이유

-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
나. 주요골자

○ 위원회의 기능(제2조)

- 기준규제의 심사,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- 규제의 신설·강화, 등록·공표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
-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
-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○ 위원회 구성(제3조)

-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함

-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
- 당연직 위원 : 기획감사실장, 재무과장, 지역경제과장, 도시환경과장, 건설과장
- 민간인 위원 :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
-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

○ 회의(제5조)

-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
-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,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함

○ 간사 및 수당(제6조 및 제7조)

-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규제업무 담당주사가 됨
- 위원회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

○ 규제신고센터의 설치(제8조)

-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

3. 검토의견

- 정부에서는 “기업하기 좋은 나라”, “생활하기 편한 나라”를 만들기 위해 최대역점 정책으로 추진해 온 규제개혁은 “99년을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”을 수립하여 행정규제로 인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거나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되어 온 사항을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여 폐지, 또는 완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 생각합니다.
-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근거에 의해 거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

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규제 사항을 폐지하고,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 억제와 기존규제의 정비를 위한 심사기능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며,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하자가 없을 뿐 아니라, 경상남도 표준안에 의거, 거창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한 것으로써, 내용이나 체계, 자구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- 그러나, 도 준칙안 제3조 4항에 의하면 위원의 위촉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본 조례 제정안에서는 위원회의 위촉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없고, 다만 제9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, 규칙을 정할 때 위원회 위촉 기준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됨.

4. 참고사항

- 행정규제기본법(제3조3항)

제3조(적용범위)

-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②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 1. 국회·법원·헌법재판소·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
 2. 형사·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
 3. 국가안전보장, 국방, 외교, 통일, 조세 등에 관한 사무 중 이 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
-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·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,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, 기존 규제의 정비, 규제심사기관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